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치: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개월로 하되, '갑' 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 '병'이 징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 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 비용 (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 등 각종 양식 》

*	-			. "		
건축물 부	-설=	주치	사장 야간기	개방 참여	신청서	(건물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병	<u>년</u> 호	
(건축주 또는 관리인)	주	소	서울시	구 (동 조 -	번지 호)
법 정	겨		옥 내	옥 외	기 계 옥 내	¶ 식 옥 외
부설주차장 현 황		대	대	대	대	대
주 차 장 개방면수			대	(m^2)	
야간개방 시간	①평 ②토 ③일(④전	ዼ	일 : 오후 후일 : 오후	시부터 익 시부터 익 시부터 익 평,토,일 모두	일 오전 일 오전	시까지 시까지 시까지
건물의 주차장 이용특성		<u></u> 가 방 여	이 어려운 특정요일			기재
위와 같이 참여하고자 합			간 해소를 위 [*]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2015	년 월	<u>년</u> 일	
			신청인(>	건물주) :	(서명	J 또는 인)
○○구ね	성장	귀	하			

첨부 : 약정서 1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주차 신청서(이용자) 주민등록 성 명 벍 호 차량번호 차 명 신 청 신 청 인 차 량 등록주소 (야간주차장 이용자)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주 소 전화번호 <u>H · P</u> 주 차 장 면 (m²) 지정구획(면) 이용면수 ①평 일: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②토 요 일: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야간이용시간 ③일(공)휴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④전 일: 24시간(평,토,공 모두 주차가능) 비 고

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구획 이용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이용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약정서 1부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앞면)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병	컨호	자택) 직장)		
	주 <i>ス</i> 위			구		동		번지		<u>ই</u>	
	주え	ŀ대	계	옥외	옥내	기계스	[}] 야 2	발개방			대
	수현	활					주체	하대수			m²
주차시설 개선계획	형	태		구획 및 시설(CC	·	_	설치()), ② >	시설변경	설치()
	시	설	구체적으	그로 기재							
	내 공	용 사									
	っ기	^r 간	착공(20	14	•) ~	완공(2	2014.	•	•)
내 안 5	L 3 2 7	ने है	신청하니	시 확인하	'시고 도		시급하 ⁶ 2014 신청인	년	l 마답! 월	기다. 일 (인))
0 0	구	청	장 귀	하							
			<	확	인	사	항	>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기존주차 시설확인	(7	정상	사용 여부	대 부확인)	신청	자 의시	・확인	설치함((), 설]치안함(()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			"구체	적으로 :	기재"		기 타 의 견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2014 년 월 일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2. 설치 및	! 보조	금 지원	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 기 존 <i>·</i> ◎ 보조금	시 설 : 지원시설 :	대 대	
주차시설 설치형태	②시	설변경	및 안내표: 설치 CCTV 등			공 사 기 간	착공: 완료:	
총설치 비 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지원	원	
3. 사용실	태 점7	1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검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점검일시	•		점검결과			점 검 자	(인)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후 기록

작성자 : 직 성명 (인)

동 의 서

1.	인경	덕人	ㅏ항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m*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 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건물주: (인)

○ ○ 구 청 장 귀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확인 복명서

결	담	당	담당팀장	과	장
재					

2015 년

성명

월

일

(인)

	설치개요 ○공사기간 : ○설치장소 : ○설 치 자 : ○설치현황도		동		~ ^건 지	ই (통	반)	
<	주차시설 배치도>	•							
2. /	시설현황								
	야간개방 주차다	귀수 :	대	(시설면적	:	m^2)			
	○ 시설형태								
	주차구획 및시설내용 :	안내표지	능 설치(), 시설	변경 설치((), 보역	<u></u>	설치()
	- 시설대 공 . ○ 설치비용 :		원						
	첨부서류		L						
	○합의서 1부.								
	○ 견적서 또는 영수○ 전・중・후 사진								
	○ 연행통장(사본)								

직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금지원 관리대장

(동)

일련	건	물주 인 적 시	· 항·	시설개	선 일시	보조금	· 지원	기 타
번호	성 명	부설주차장 위 치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일	지원금액	지원일시	(설치방 법 등)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신청 접수대장

(동)

								_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번	접수일	신청인	부설주차장 위 치	전 화 번 호	현 장 확인일	시설 내용	설치가 능여부	개 방주차 면 수	비고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가능 통보서

□ 수 신 :		귀하		
		, ,		
□ 발 신 :		동장		
설치공사)를 하고	1자 신청하신 /	사항에 대하여 형	변장확인 결과	시설변경, 보안시설 · 주차시설 설치가능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차장 위	· 기치 : 00구	동	번지	<u>ই</u>
○ 주차시설	개선 가능여부	: 가능(), 불	가능()	
○ 불 가 사	유 :			
○ 보조금	액 :	원		
※ 공사완료	시 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	의거하여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만
보조금지급이 기	능하니, 반드시] 공사현장의 전	·중·후 사	진을 첨부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시	시기 바랍니다.			
(문의전	.화: -)		
		2015 년	월 일	
	담당자 소	속 :	구청	

성명 :

(인)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전경 사진

구	신 청 인	성 명	주차시설 내 용
구 분	선 경 인	건물위치	
전			
Ť			